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852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박지원  
최혁진 · 조계원 · 문정복  
소병훈 · 김문수 · 안도걸  
이성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과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

조약2).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다른 사람(공범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협박 수단, 협박 대상, 위해 수법 또는 위해 장소를 모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br>-----<br>-----<br><u>10년-----5천만원</u><br>-----.                                                                     |
| ② (생   략)<br><u>&lt;신   설&gt;</u>                                                                           | ② (현행과 같음)<br><u>③ 다른 사람(공범은 제외한다)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협박 수단, 협박 대상, 위해 수법 또는 위해 장소를 모방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
| <u>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br>-----.                                                                                                        |